

인천지방법원 2023. 11. 24 선고 2023가단25092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,61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정창근

별지